

박근혜대통령 탄핵과 재판

'국정농단'재판으로 포장된 법치훼손

◎ 일반 범죄사실을 이유로 한 검찰수사와 탄핵

-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배, 대의민주제 훼손

⇒ 공무상 비밀누설죄

☞ 보호할 가치 있는 비밀인가? 비밀누설인가?

-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 침해

⇒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(무죄)

☞ 직권의 남용인가? 공모 있었나?

⇒ 뇌물죄

☞ 뇌물죄와 제3자뇌물죄 중 어디로 의율?

☞ 제3자뇌물죄의 부정청탁 있었는가?

☞ 공모 있었나?

◎ 법률용어 아닌 선동적 용어

(농단 ~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하다)

- 특검법의 '국정농단'표현

- 언론의 '국정농단'표현

◎ 탄핵과 재판의 법치주의 훼손

- 재판 절차

탄핵소추의 증거는 공소장과 언론기사

3개월만의 탄핵결정 ↔ 3년9개월간의 재판

주 3~4회 구속재판

불구속재판원칙 무시, 별건 구속(이유:증거인멸)

- 결정·판결 내용의 모순

강요죄 무죄 등 많은 부분이 무죄나 불기소

유죄 부분도 공모 등 증거 부족, 무리한 법리적용

(종전 판례에 반하는 뇌물죄의 공동정범 범위 확장,

포괄적 제3자뇌물죄 최초 인정)

공무상비밀누설죄?

- 국정 문건 유출 → 14건 문서만 **공무상비밀누설죄**
 - 47건 문서 중 33건 문서(인사자료, 정책보고서 등)는 무죄
 - 대통령 ~ "최서원 의견을 들어보라" → 정호성이 최서원에게 이메일/인편으로 전달
 -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, 국무회의 말씀자료(청와대 비서진 교체내용) ~ 발표 1일 전
 -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근절 방안
 - K스포츠와 더블루케이의 스포츠클럽 지원사업 전면개편 방안
 - 로잔 국제스포츠 협력거점 구축 추진현황
 -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구상(드레스덴 연설문) ~ 연설 1일 전
 - 대통령의 순방일정(√) ~ 서유럽, 중동국가, 북미, 이탈리아 ↔ 의상 제작 용도(정호성)
 - 대통령의 멕시코 순방(√) ~ 문화행사 추진계획안·일정·상세일정
 - 수도권 복합 생활체육시설 입지선정 후보지(√)
- 비밀로 분류된 문서가 아니고, 비밀로 보호할 가치 없음(←국가기능 침해위험 없음)
 - 1999년 '옷 로비'의혹사건 ~ 검찰총장에게 전달된 내사결과보고서 → 비밀로 보호할 가치 없음
- 직무수행 보조자에게 조언·자문 구하기 위해 알리는 것은 '누설'아님
 - 대통령 ~ "취임 초기까지 일부 연설문·말씀자료의 표현 등에 관한 조언을 구한 것"
 - 최서원은 보좌진의 그룹 공용메일 중 관심 분야만 읽은 것, 주요내용을 수정한 증거 없음
 - 민간인의 국정 지배로 볼 수 없음, 태블릿PC(최서원은 사용 부인)는 문서수정기능 없었음

직권남용죄?

※ 직권남용 ~ 직권부여 목적에 위배되는 위법·부당한 행위(공익목적 → 최서원의 사익추구 인식 여부)

▪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알선 → 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←협박 x)

- 대통령은 안종범(경제수석)에게 흡착제 기술 가진 중소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부당한 대우 받고 있으니 현대자동차에서 기술 채택 가능한지 알아보라고 지시하여 현대자동차에 납품
- 대통령의 공모 및 직권남용 여부 ~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면서 도와주었다는 증거 없음
 - 대통령 ~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행위임
 - 최서원은 청탁 대가로 5천만원 금품 수수, 대통령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했음

▪ 미르, K스포츠 재단설립에 대기업들 출연 요청 → 직권남용죄(뇌물죄·강요죄 무죄)

- 대통령은 한류 확산, 스포츠 인재양성 위해 안종범에게 재단설립 지시하여, 전경련 통해 16개 대기업이 486억원 출연 미르재단 설립, 15개 대기업이 288억원 출연 K스포츠 재단 설립
- 삼성 ~ 이재용 승계작업 도움 대가로 제3자뇌물수수 → 승계작업의 존재에 관한 증거 부족
- 공익재단 설립 요청이 직권남용인지 여부 ~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알면서 요청했다는 증거 없음
 - 최서원은 플레이그라운드(광고), 더블루케이(스포츠용역)의 실질적 운영주 ~ 신생회사의 차명주주, 제3자 대표이사

▪ GKL에 장애인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선수 Agent계약 → 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

- 1차 ~ 대통령이 최서원 요청에 따라 안종범에게 'GKL이 스포츠단 설립하는 데 컨설팅 기업으로 더블루케이 소개토록 지시 → 배드민턴·펜싱 선수단 창단 요구 → GKL은 거절(80억원 용역)
- 2차 ~ 문체부 2차관(김종)이 최서원 요청에 따라 규모 작은 선수단 창단 요구 → 장애인 선수단 창단, 더블루케이는 선수 Agent 계약(선수 3명의 전속계약금 중 50% 3천만원 수수료)

☞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 알았다는 증거 없음(중소기업 지원행위로 인식), 2차 행위 공모증거 없음

▪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원 후원케 함 → 제3자뇌물수수죄·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 ☞ 더블루케이가 누슬리(스위스 전문회사)와 협력하여 시설 건립 추진(5% Agent 수수료 취득) → "최서원의 요청에 따른 것"이므로 남용(?) ↔ 대통령이 더블루케이의 실질적 운영주가 최서원임을 인식했다는 증거 없음, 청탁 불필요

승마 지원 뇌물죄?

- 삼성전자의 최서원 딸 승마 지원 → 뇌물수수죄(상대방: 뇌물공여·업무상횡령죄)
 - 2015. 7. 25. 및 2016. 2. 15. 각 단독면담 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승마선수단 지원 요청
 - 삼성전자는 코어스포츠(최서원 지배회사)와 승마선수단 지원 용역계약 → 용역대금 36억 3,484만원 지급
 - 삼성전자는 최서원 딸(승마선수)의 승마용 말 3필(34억원) 및 선수단 차량 4대 무상사용이익 제공
 -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인가 제3자뇌물죄인가? ~ 부정청탁 요건 필요 유무
 - 공무원이 뇌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, 제3자가 공무원의 심부름꾼이거나 대리인이 아니면 제3자 뇌물죄로 의율해 온 것이 종전 판례 입장
 - 사전에 뇌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게 한 경우는 범죄구성요건 해당 문제 ↔ 뇌물 사후처리와 구별됨
 - 제3자뇌물죄의 입법취지 ~ 공익목적 등 '좋은 뜻'으로 제3자에게 제공케 한 경우에는 직무수행과의 대가 관계(뇌물성)를 인정하기 어려워 처벌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
 - ☞ 제3자뇌물죄의 구조 → 부정청탁 요건 필요(대법관 4인의 소수의견)
- 대통령과 최서원의 공모 여부
 - 대통령은 승마선수들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삼성의 승마선수단 지원을 당부한 것일 뿐, 구체적으로 최서원 딸의 지원을 요구한 적은 없음, 위 용역계약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고 그 계약 당시(2015. 8. 26.) 향후 구입할 말을 최서원이 수수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음은 법원도 인정
 - 법원은 대통령의 공모 증거로 최서원과의 평소 친분관계, 최서원 의견을 국정에 반영한 사실, 최서원의 사적 부탁을 들어준 사실만 들고 있을 뿐,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인식하면서 이 사건에 관한 구체적 공모를 했는지에 관한 증명은 없음 → 최서원이 나중에 딸만을 위한 지원으로 전용했을 뿐임

영재센터 지원 제3자뇌물죄?

- 삼성전자의 영재센터 지원 → 제3자뇌물수수·직권남용죄(상대방: 제3자뇌물교부·업무상횡령죄)
 - 위 각 단독면담 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동계스포츠 메달리스트들이 설립하는 영재센터 후원 요청
 - 2015. 10. 2. 및 2016. 3. 3. 영재센터(최서원 설립, 조카 운영)에 운영자금 16억 2,800만 원 지급
 - 공소사실 ~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삼성 '승계작업'을 도와달라는 묵시적 부정청탁을 받고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하여 위 후원 강요 → 강요죄는 무죄(협박 x)
- 부정청탁 유무
 - 계열사 지배권 확보라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'승계작업' 및 일부 개별적 구성 현안의 직무수행 대가?
 - 법원이 불특정한 '승계작업'을 청탁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포괄적 제3자뇌물죄를 인정한 것 ↔ 청탁 대상인 직무행위는 명확히 특정되어야 함, 대통령의 직무는 광범위하므로 기업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공익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 모두 제3자뇌물죄가 되어 부당
 - 승계작업
 - 외국자본(엘리엇 등)에 대한 경영권방어 강화 추진 ↔ 2015. 7. 25. 단독면담 시에는 합병되어 시급 x
 -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른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를 위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최소화
↔ 공정위의 유권해석 받아 처리, 대통령에 대한 보고·전달이나 지시 없었음
 - 삼성생명의 금융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금융위 승인추진 ↔ 금융위 입장에 따라 전환계획 보류
 - 개별 현안
 -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↔ 금융위 및 거래소의 권유로 미국 아닌 국내 상장된 것이므로 청탁대상 x
 - 투자유치 및 환경 규제 완화 등 바이오산업 지원 ↔ 미래 먹거리로 국정과제이므로 청탁대상 x
 - 외국자본에 대한 경영권방어 강화 ↔ 포이즌필, 차등의결권 제도 등은 재계 일반의 문제로 청탁대상 x
- 직권남용 여부 ~ 법원은 위 운영자금의 사적 오용 언급 없음, 대통령이 최서원의 사익추구不知 → 남용 x

롯데그룹의 지원 제3자뇌물죄?

- 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원 후원케 함
 - 제3자뇌물수수죄·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←협박 x)
- 공소사실 ~ 대통령은 2016. 3. 14. 롯데 회장 단독면담 당시 롯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청탁을 받고(묵시적 부정청탁)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자금지원 강요 → 롯데는 K스포츠에 70억 원 송금(→10여일만에 반환)
- 묵시적 부정청탁 ~ 70억원이 면세점 특허 재취득(에 관한 대통령 직무집행) 대가인 점에 관해 상호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어야 함 → 대가관계나 그 인식 증거부족(청탁 불필요)
 - 대통령은 "스포츠산업 전반에 대해 그룹 차원에서 관심 갖고 계속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" 고 말했다 뿐(당사자 진술 일치), 안종범의 지원중단 건의 시 송금사실 인지
- 2016. 3. 14. 당시 롯데 면세점 문제 청탁 불필요
 - 2015. 11. 롯데 월드타워, SK 워커히 면세점 특허재승인 탈락 → 비판여론 비등(경쟁력 있는 기존 면세점 폐점으로 인한 투자낭비, 고용문제 야기, 국내관광 위축) → 대통령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
 - 2016. 1. 초순 대통령은 안종범에게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추가발급 신속검토 지시
 - 2016. 2. 18. 관세청도 그 제도개선방안을 3월경 발표예정 및 그 사업자선정 절차도 단축하여 9월까지 선정예정 업무보고 → 롯데면세점은 매출액 1위이므로 선정 예측(12월 취득)

SK그룹에 대한 지원요구 제3자뇌물죄?

- SK그룹의 가이드러너 사업 지원 요구 → 제3자뇌물요구죄
 - 2016. 2. 16. 단독면담 시 SK그룹 회장에게 K스포츠의 시각장애선수 지원 가이드러너 사업 후원 요청
 - K스포츠는 가이드러너 학교설립자금, 더블루케이의 연구용역비 등 총 89억원 요청 → 거절, 30억원 후원으로 협의 중 K스포츠측 요구에 문제있다는 안종범 건의(SK부사장)에 따라 대통령이 후원중단 지시
 - 공소사실 ~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모하여 SK그룹 회장으로부터 아래의 명시적 부정청탁을 받고 위 후원 요구[대통령은 후원 요청이나 중단지시 사실자체를 부인]
 - 부정청탁 유무
 -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 ~ “면세점 탈락 후 직원들 고용이 걱정이다” (→신규특허절차 신속진행)
 - 대통령은 “면세점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이다” 답변, 이미 제도개선방안 신속 마련 중
 -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승인 ~ “신속하게 결론을 내주시는 것이 모두에게 좋을 것 같다”
 - 대통령은 “알겠다” 답변(→‘검토해 보겠다’는 의미), 공정위는 청와대에 ‘조건부 승인’ 의견 → 불허
 - 회장의 동생(부회장) 형집행을 80% 넘어 가석방 ~ “동생이 아직 못 나와 조카들 볼 면목이 없다”(→조기 석방되도록 배려해 달라)
 - 대통령은 침묵(→무시), 회장 동생은 2016년 3.1절 가석방에서 제외된 후 92% 형집행 시 가석방
 - 공익사업의 후원요청, 최서원의 사익추구(더블루케이 실질적 운영주) 알았음이 증명 x, SK측의 후원 거절 →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부정청탁 x
 - 대통령의 답변이나 태도는 부정청탁을 승낙하는 언동이 아님 → 부정청탁을 ‘받고’ x

탄핵사유와 법원재판 결과

- **국정 문건 유출** → 14건 문서(해외순방일정, 체육 관련 등)만 **공무상비밀누설죄**
 - 연설문, 말씀자료 ; 인사자료, 정책보고서 등 47건 문서 중 33건 문서는 무죄
- 최서원 추천에 따른 공직자(문체부장·차관·위원) 인선 → 불기소(범죄 x)
- **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알선** → **직권남용죄**(강요죄 무죄)
- **미르, K스포츠 재단설립에 대기업들 출연 요청** → **직권남용죄**(뇌물죄·강요죄 무죄)
- 최서원의 플레이그라운드 통한 사익추구 지원
 - 미르재단과 7건 총 1억 3,860만 원 연구용역계약 → 불기소(범죄 x)
 - KT와 7건 총 68억 1,767만 원 광고계약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 - 현대자동차그룹과 5건 총 9억 1,807만 원 광고계약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- 최서원의 더블루케이 통한 사익추구 지원
 - K스포츠와 업무협약 체결 사업운영 담당 → 불기소(범죄 x)
 - **GKL에 장애인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선수 Agent계약** → **직권남용죄**(강요죄 무죄)
 -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케 하고 그 운영 맡기로 합의 → 무죄(직권남용죄·강요죄)
 - 문체부 설치 광역 거점 스포츠club의 운영주체 K스포츠 경영자문 → 불기소(범죄 x)
 - **롯데그룹으로 하여금 K스포츠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자금 70억 원 후원케 함** → 제3자뇌물수수죄·직권남용죄(강요죄 무죄)